

한국의 광산물 HSK Code 개정방안 연구

Study on Revision of Minerals HSK Code of Korea

이화석(Hwa Suk Lee)*, 김유정(Yu Jeong Kim)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 Corresponding author : lhs@kigam.re.kr

● 요약

본 연구에서는 법정광물 및 정부비축광물을 대상으로 HSK Code 개정(안)을 수립하였다. 법정 광물 중 리튬 광, 희토류 광, 사문석, 연옥, 비축 대상 광종 중 인듐 괴, 페로텅스텐, 안티모니 괴, 셀렌 그라놀, 갈륨, 산화란탄, 탄산세륨 등의 경우 타 품목과 혼합되어 HSK Code가 부여되어있어 세부 품목별로 정확한 무역통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현재의 HSK Code 분류체계에서는 대략적인 품목의 명칭 정도만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용도, 규격, 성분, 타입 등 보다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정보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정광물, 정부비축 등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적 데이터 구축을 위해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여 단독으로 HSK Code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국제 공통 기준(HS Code 6단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수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금액기준 : 5천만불 이상, 물량기준 : 5천톤 이상)인 품목을 개정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HSK Code간 Hierarchy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주요어 : 법정광물, 비축광물, HSK Code, 개정안

● Abstract

In this study, a proposal for revision of HSK Code was established on legally designated minerals and national stockpile minerals. It is difficult to exactly identify trade balances of minerals, such as lithium ore, rare earth ore, serpentine, kidney stone in legally designated minerals and ingot of indium, ferro-tungsten, ingot of antimony, granule of selenium, gallium, lanthanum oxide, cerium carbonate in national stockpile minerals because HSK Codes of them were not allocated separately. Furthermore, specific use, standard, component, type of products cannot be exactly identified in current HSK Code system. Therefore, it is makes rule to separately manage minerals which were managed by government such as legally designated minerals and national stockpile minerals. However, a proposal for revision of HSK Code system was established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HS Code) and the items over a certain size(amounts : over 50 mil.\$, volumes : over 5000 ton) were selected as revised subjects. Moreover hierarchies between HSK Codes were considered.

Key word : Legally designated minerals, National stockpile minerals, HSK Code, Revision

● 서론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HS Code 제정을 통해 국제무역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비교 분석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국제무역에서의 상품의 이동에 따른 분류체계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무역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품목분류표의 제공 등을 도모할 수 있다.¹⁾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HS 협약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과약등을 위하여 협약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을 기초로하여 품목을 세분화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하고 있는데(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이를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라 한다.²⁾ HSK code를 기반으로 한 수출입무역통계는 직접 수출입무역을 관장하는 관세청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물부, 수산환경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수출입무역업체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부각되고 있다.³⁾ 특히, 주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자원산업분야의 무역통계자료는 원료물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HSK 체계의 다양한 품목중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법정광물

및 비축광물의 HSK Code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수립하였다.

● HSK Code 제도현황

HSK는 HS 품목표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되어 관세율표, 각종 수출입 관련 공고 및 무역통계 작성에 사용되는 10단위 체계의 품목분류표이다. HS 협약상의 HS 품목분류표 6단위 코드번호를 기초로 하여 자국의 관세율 및 통계 등의 필요에 따라 이를 다시 10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6단위까지는 HS 품목표의 기본항목을 유지하고, 7~10 단위는 관세·무역·통계 등 정책의 필요에 의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HSK는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더욱 세분화시켜 관세뿐만 아니라 통계, 운송 등 관세행정 분야와 무역관련 분야의 개별법에서 품목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통계청의 SKTC와 지식경제부의 MTI통계등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표 1).⁴⁾

HSK Code 개정은 HS 협약의 수정 및 국제협약 발효 등으로 WCO로부터 변경통보가 있거나, 신상품개발 및 분류기준 변경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금지과 환경보호, 산업재해방지등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관련 업체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장관의 고시로 개정하고 있다.⁵⁾ HSK 개정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이 대내외적으로 HSK 개정 수요조사를 거쳐 차기 HSK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최종

1) 김창길 외(2008), 「HSK 세분화 및 각국 사례조사 용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9~12

2) 김창길 외(2010), 「관세청분류코드(HSKCS)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범위 확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1

3) 김창길 외(2008), 「HSK 세분화 및 각국 사례조사 용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23

4) 김창길 외(2008), 「HSK 세분화 및 각국 사례조사 용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20~21

5)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0), 「관세청분류코드(HSKCS)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범위 확대」, p100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차년도 HSK 개정안을 마련, 차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⁶⁾

● 광물자원 HSK Code 현황분석

1. 법정광물(정광 및 광석) HSK Code 현황분석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광물은 금속광 33종⁷⁾, 비금속광 26종⁸⁾으로 총 총 59개 광종이

지정되어 있다. 위 59개의 법정광물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검색을 통해 HSK Code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광종의 경우 품목별로 세분화가 이루어져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광물 중 리튬 광(HSK 2530909099 기타), 희토류금속 광(HSK 2530909099 기타), 비금속광물 중 사문석(HSK 251620 그 밖의 석비용·건축용 암석), 연옥(HSK 2530909099 기타)의 경우 단독으로 HSK Code가 부여되어있지

표 1. HSK 기본구조

HSK해석에관한통칙 (GRI)	○ 품목분류표 전체에 대한 분류기준으로 7개의 통칙으로 구성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음
주(Legal Note)	○ 부, 류, 소호에 설정된 분류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각각 해당 부, 류, 소호에 대해 적용 - 분류범위, 용어의 정의 및 경합물품 등을 규정 ○ HS협약 주와 국내 주(6개)가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음
호(Heading; 소분류)	○ 류(2단위)를 세분류한 4단위 ○ 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소호(sub-heading; 세분류)	○ 호를 세분류한 6단위(개정 5,205개)(소호까지 국제공용) ○ 소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품목번호	○ 소호를 세분류한 10단위(국내용) ○ 품목번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부(Section; 대분류) 류(Chapter; 중분류) 절(Sub-chapter)	○ (구성) 제1부 ~ 제21부(부의 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 (구성) 제1류 ~ 제97류(류의 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 절은 특정 류에서 이해편의상 유사물품 군(群)으로 구분한 것으로 절의 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체계(HSK)개편」, 2011.10.19

- 6) HS는 원칙적으로 5년 주기로 개정되며 '88년 이후 '92년, '97년, '02년, '07년, '12년에 걸쳐 총 5회 개정됨. 개정 HS의 발효일은 HS협약 제16조에 의거 개정안이 4월 1일 전에 통지된 경우 제2차년도 1월 1일,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통지된 경우 제3차년도 1월 1일이 됨. 따라서, HS 개정을 위해서는 시행예정일로부터 적어도 3년 이전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출된 HS 개정안은 매년 3월과 9월 열리는 WCO HS위원회에서 참가국의 논의 및 투표를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함. 17년 HS 개정안은 '14년 3월 제53차 WCO HS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개정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14년 6월 WCO 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가 이행될 계획임. 위와 같은 HS 개정에 관한 우리나라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대내외적으로 HS 개정 수요조사를 거쳐 차기 HS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최종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 개정안을 WCO에 제출하고 있음. (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담당 : 이지선)
- 7)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 아연광, 장연광, 주석광, 안티몬광, 철광, 수은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마그네사이트, 비소광, 보크사이트, 우라늄광, 리튬광, 마나듐광, 탄탈륨광, 니오븀광, 지르코늄광, 사금,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희토류광(세륨, 란타넘, 이트륨 함유도석)
- 8) 인광, 석탄, 유황,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펄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 포함), 붕소광, 형석, 하석, 운모(견운모, 질석 포함), 석고, 납석, 활석, 홍주석(납정석, 규선석 포함), 명반석, 중정석, 규조토, 장석, 고령토(도석,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와목토, 목절점토, 반토혈암 포함), 불석, 사문석, 수정, 연옥, 석회석(백운석 포함), 규석, 규사.

않고 무역량이 미미한 타 광종과 함께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카드뮴의 경우에는 특정광에서 직접 채취되지 않고 주로 아연 제련의 부산물로 얻어 광석 및 정광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HSK Code가 부여되어있지 않다.9) 또한 전반적으로 규격에 따른 세분화된 분류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표 2).

2. 비축광물(금속 및 화합물) HSK Code 현황분석

'14년 기준 정부비축 광물은 조달청 18개 품목,

표 2. 법정광물 HSK Code 현황

유형	광종	품목명	HSK Code
금속광	리튬	기타	HSK 2530909099
	카드뮴	-	-
	희토류	기타	HSK 2530909099
비금속광	사문석	그 밖의 석비용·건축용 암석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HSK 2516201000
		그 밖의 석비용·건축용 암석(기타)	HSK 2516209000
	연옥	기타	HSK 2530909099

출처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표 3. 비축광물 HSK Code 현황

비축 기관	비축		HSK Code		
	품목	규격	Code	품목	
조달청	인듐 괴	Indium 99.995% minimum	8112925000	인듐 괴, 웨이트, 스크랩, 분	
한국 광물 자원 공사	텅스텐	페로 텅스텐	W : 75.0% min	7202800000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안티모니 괴		Sb : 99.65% min	8110100000	안티모니 괴, 분
	페로티타늄		Ti : 70% min	7202910000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셀레늄그레놀		Se : 99.99%min,	2804900000	셀렌 금속
	갈륨		Ga : 99.9999% min	8112923000	갈륨 괴, 웨이트, 스크랩, 분
	희토류	산화 란탄	La2O3 : 99.95% min	2846909000	기타 희토류금속 화합물
희토류	탄산 세륨	CeO2 : 99.99% min	2846100000	세륨화합물	

출처 : 조달청 <http://www.pps.go.kr>, 한국광물자원공사 <https://www.kores.or.kr>

9) 2617.90 (호) 해설 (출처 : 관세청 품목분류 <http://www.customs.go.kr>) : 인듐·갈륨·레늄·하프늄·탈륨과 카드뮴은 일종의 특정광에서 직접 채취되는 것이 아니며 타금속(예: 아연·연·동·알루미늄·지르콘과 몰리브데늄)들의 야금 공업에서 부산물로 얻는다.

한국광물자원공사 9개 품목으로 총 27개 광종이다. 위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품목 분류 검색을 통해 HSK Code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정광물과 마찬가지로 일부 품목의 경우 세분화된 분류가 이루어져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듐 피(HSK 8112925000 인듐 피, 웨이트스와 스크랩, 분), 안티몬 피(HSK 8110100000 안티몬 피, 분), 페로텅스텐(HSK 7202800000 페로 텅스텐 및 페로실리코 텅스텐), 페로티타늄(HSK 7202910000 페로 티타늄 및 페로 실리코 티타늄), 셀렌 그래놀(HSK 2804900000 셀렌 금속), 갈륨(HSK 8112923000 갈륨 피, 웨이트스, 스크랩, 분), 산화란탄(HSK 2846909000 기타 희토류 화합물), 탄산세륨(HSK 2846100000 세륨 화합물) 등의 경우 단독으로 HSK Code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타 품목과 혼합분류 되어있어 정확한 무역현황을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반적으로 규격에 따른 세분화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표 3).

● 광물자원 HSK code 개정(안) 검토

법정광물 및 비축광물 HSK Code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광물자원 HSK Code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광물자원의 세분화된 분류가 미흡한 상황이다. 법정 광물 중 리튬 광, 희토류 광, 사문석, 연옥, 비축 대상 광종 중 인듐 피, 페로텅스텐, 안티모니 피, 셀렌 그래놀, 갈륨, 산화란탄, 탄산세륨 등의 경우 타 품목과 혼합되어 HSK code가 부여되어있어 세부 품목별로 정확한 무역통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희유금속 및 기초금속 HSK code 510개 중 복수 품목으로 등록된 HS code(기타품목 포함)는 229개로 45%에 달한다. 두 번째, 품목분류체계상의 품목정보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실제 필요한 다

양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광종별로 규격 및 성분, 타입 등이 다양하고 같은 광종이라 하더라도 산업별로 수요하는 규격 및 타입등이 특화되어 있어 시장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품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의 HSK code 상에서는 대략적인 품목의 명칭 정도만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용도, 규격, 성분, 타입 등 보다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정보는 확보하기가 어려워 무역통계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산업 수요를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기타" 세 번이 많아 품목정보를 더욱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다. HS 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에 있어 모든 품목을 HS code로 분류할 수는 없어 무역량이 미미한 품목 및 비슷한 유형의 품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기타" 혹은 "기타○○" 품목으로 묶어 광종들에 HSK code를 부여하고 있다.¹⁰⁾ 하지만 희토류 광, 리튬 광 등은 법정 광물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무역 거래량으로 인해 기타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초금속 및 희유금속 HS code 510개 중 위와 같이 "기타 품목"의 형태로 분류된 HS code는 90개로 18%에 달한다. 이와 같은 "기타 품목"의 증가는 품목 분류체계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통계의 정확성을 저하시키며 개별 광물자원에 대한 정확한 시장수요현황 파악을 어렵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현 광물자원 HSK Code 상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하에 광물자원 HSK Code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국가적 관리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HSK Code를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법정광물, 정부비축 등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적 데이터 구축 및 현황 파악을 위해 품목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단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광업법 및 비축 등 국가정책적으

10) 김창길 외(2008), 「HSK 세분화 및 각국 사례조사 용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40

로 관리되고 있는 광물자원이 다른 품목과 혼합되어 HSK Code가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품목을 독립적인 HSK Code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국제기준(HS Code 6단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HSK Code는 HS 품목표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것으로 HS 품목분류표 6단위 코드번호를 기초로 하여 자국의 관세율 및 통계 등의 필요에 따라 이를 다시 10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HSK Code 6단위까지는 국제적 공통기준으로 HSK 개정시 7~10자리 사이에서만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개정(안)을 수립하였다. 다만, HS Code는 환경변화 및 각국의 수요를 반영하여 5년 주기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HSK Code 6자리 이내에서의 개정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청에 차기 HS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HSK Code간 Hierarchy 균형을 고려하였다. HSK 품목분류표에서는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품목들을 HSK Code별로 품목간 Hierarchy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구조화되어있다. 따라서 HSK Code 개정시에도 이러한 품목간 Hierarchy를 고려하였으며 같은 Hierarchy에 있는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세분화하는 것은 지양하였다. 예를 들어, 인듐 피의 경우 산업적 중요성과 정부비축 광종인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분류기준(HSK 8112925000 인듐 피, 웨이트스와 스크랩, 분)을 보다 세분화하고 현재 HSK Code 분류 레벨을 (7번째 자리) 보다 상위 레벨(5번째 자리)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타 품목 HSK Code Hierarchy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국제기준(HS Code 6단위)을 준수하기 위해 현행 분류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인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관세청에 의견개진을 통해 차기 HS 개정시 인듐 피의

HS Code 분류레벨을 보다 상위레벨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교역추이 및 규모를 고려하였다. 금속자원의 수입추이 및 규모(금액·물량)를 분석하여 증가추세인 동시에 수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금액 기준 : 5천만불 이상, 물량기준 : 5천톤 이상)인 품목을 개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법정광물 및 정부비축광종이라고 하더라도 교역량이 매우 적은 리튬 광, 희토류 광, 사문석, 연옥, 페로팅스텐, 페로티타늄, 셀레그레놀, 갈륨, 산화란탄, 탄산세륨의 경우에는 HSK Code 개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

현행			개정(안)			비고
품목번호 HSK No.	품명		품목번호 HSK No.	품명		
2530 90 90 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기타 기타 기타		2530 0 90 90 산설 산설	(좌동) 회토류광과 그 정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광물로서 단독관리 필요 회토류 광의 경우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 불때 HSK Code소호(5~6자리) 단계에서 단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나 국제기준순수 및 타품목 HSK Code Hierarchy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9~10자리에서 개정
7202 2 21 00 00	페로알로이 페로실리코 실리콘 함유량 100분의55 초과하는 것		7202 2 2 21 산설 산설	(좌동) 실리콘 함유량 100분의 75 초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비축규격 (Si : 75% min 반영)
7202 30 00 00	페로알로이 페로실리코 망간		7202 2 30 산설 산설	(좌동) 망간 함유량 100분의 70 초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비축규격 (Mn : 70~75% min 반영)
7202 4 41 00 00	페로알로이 페로크롬 탄소 함유량 전 중량의 100분의 4 초과하는 것		7202 2 4 41 산설 산설	(좌동) 크롬 함유량 60% 이상인 것 기타		
8110 10 00 0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 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안티모니 과, 분		8110 0 10 산설 산설	(좌동) 안티모니 과 안티모니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축광물로서 단독관리 필요
8112 9 92 50 99 50 00	베릴륨, 크로뮴, 게르마늄, 바나듐, 갈륨, 하프늄, 인듐, 니오븀, 레늄, 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 스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기타 과, 웨이스트와 스크랩, 분 인듐 기타 인듐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듐 과의 경우 정책적/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HSK Code 소호(5~6자리) 단계에서 단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나 국제기준순수 및 타품목 HSK Code Hierarchy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현 HSK Code 유지

그림 1. 광물자원 HSK Code 개정(안).

● 결론

HSK 체계에 따른 무역통계자료는 통관과 직접 관련된 관세청 및 수출입무역업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산업의 기업들에게도 정책수립 및 경영의 사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요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자원산업분야의 무역통계자료는 원료물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법정광물 및 비축광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HSK 품목분류체계상 주요 광물자원의 세분화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현행의 분류체계에서는 정부 및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품목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거래되는 광물자원의 정확한 시장수요파악이 어려워 비축 및 자원순환 등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자원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자원거래 시장의 현황 및 수요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광물자원 HSK Code를 개정함으로써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관리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HSK Code를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개정안을 수립하였으나 국제기준, 타품목과의 Hierarchy, 교역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광물의 경우에는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차기 HS 개정시 이러한 광종에 대한 국제기준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사사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GP2012-020)” 과제에서 지원되었습니다.

● 참고문헌

- 김유정 외(2014), 「2013년도 광업·광산물 통계연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창길 외(2008), 「HSK 세분화 및 각국 사례 조사 용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창길 외 (2010), 「관세청분류코드(HSKCS)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범위 확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1), 「2011년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1),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체계(HSK) 개편」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kor/>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 <https://www.korea.or.kr/>